



안전한 환경 속 배움이 숨 쉬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2026. 5. 28.

교 육 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목 차

1. 추진 배경	1
2. 그간의 경과	2
3. 현황 및 문제점	3
4. 추진 방향	5
5. 추진 과제	6
[과제1]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	6
[과제2]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10
[과제3] 배움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13
6. 향후 계획	15
[참고] 특이 민원 대응 절차	16

1

추진 배경

- 강원도 체험학습 안전사고의 1심 판결('25.2) 이후, 안전사고 발생 및 책임 부담으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축소되는 경향

■ 시도교육청 수련회 및 수학여행 실시 현황 (충북제외)

- [전체] '23.63.2%→'24.65.7%→'25.62.2%, [초등] '23.53.3%→'24.57.2%→'25.48.1%
- '25년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대전(4.0%)의 실시율이 매우 낮은 상황

■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강원도 소재 OO초(6학년) 학생이 버스 하차 후,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22.11월)
- 담임교사 1심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 2심 금고 6개월(선고유예), 보조교사 무죄

- 현장체험학습 축소는 '학생 교육기회 제한' 및 '학교 구성원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현장학습' 두고 교사-학부모 갈등 증폭.."교사가 봉이냐" 반발(MBC, '24.5.24.)

참고

현장의 목소리

※ 교원단체 주관 설문조사, 교육부 자체 조사 등

교사

-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면책 기준 필요
-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필요
-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등 기관의 적극적 대응 및 지원 필요
- 교사 89.6%,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26.3월, 전교조 실태조사)

학생

학부모

- 교사의 무거운 책임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추억이 되는 현장체험학습 필요
- 친구들과 깊은 추억을 쌓을 기회인데, 학창 시절이 삭막해질 것 같다는 우려
-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업체를 입찰하고 외주를 주는 방식 필요

교육청

전문가

-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 보조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
- 시도 소재 체험기관에 대한 안전과 품질을 인증하는 절차 마련 필요

- 교사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안전법」 일부 개정('24.12.)
 - ※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면제(신설, 제10조제5항)
- 현장체험학습 표준매뉴얼 개발·보급('25.1.)
 - ※ ▲과도한 업무 규정 개선, ▲체험학습 유형별 운영 방침 체계화, ▲보조인력 배치·운영 세부 내용 규정, ▲현장체험학습 취소 시 위약금 처리 방법 명확화 등
- 교사 면책, 보조인력 배치 관련 조례(안)* 마련 및 교육청 안내('25.2.)
 - * 주요 내용 :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기준·자격·역할 등에 관한 사항,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교육청의 학교 지원 전담기구 업무에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하고, 담당 인력 지원('26년 국가정책수요 총 30명 증원, '25.10.)
- 교사 면책 기준 명확화를 위한 「학교안전법」 일부 개정('25.12.)
 - ※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제10조제5항)
- 안전사고 관련 교사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자문('26.3.27.)
- 현장체험학습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25.12.~)

❖ 현장체험학습 전문가 등 의견수렴('25.12.19.)

※ 한국교원대 교수, 학교안전센터 대표, 교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교원 6개 단체 의견수렴('26.2.6., 3.9., 3.13., 차관4.30., 5.18., 장관5.21.)

※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시도교육청 공동 운영협의체* 구축 및 지원방안 협의('26.3.10. 4.24.)

* [주요역할] ▲현장체험학습 업무 관련 의견 수렴 및 조정·협의, ▲(가칭)현장체험학습 지원 플랫폼 운영,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내자료 수정·보완 등

❖ 현장체험학습 정책자문단* 구성 및 의견 수렴('26.4.22., 5.22.)

*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 경험있는 현장 교원(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26.5.7.), 학부모단체 의견수렴('26.5.22.)

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실효성 미흡

- 「학교안전법」 일부 개정으로 책임 면제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면책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분쟁 시 실효성 논란 지속
 - 이에 현장에서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완전 면책 요구
-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면책 규정 미비, 법적 분쟁에서 교사가 보호를 받으려면 예방조치가 면책요건에 들어가야...”(연합뉴스, '25.12.28.)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

순	항목	응답률
1	안전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	약 70%
2	학생 인솔 및 생활지도 어려움	약 10%
3	사전 준비 및 행정업무 부담	약 9%
기타	학부모 민원, 프로그램 운영 등	-

(한국교총, 교사 약 6,000명, '25.3.)

-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이후 교사를 보호·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교사의 불안 가중
 - 시도별 현장체험학습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컨설팅, 사전답사, 정보제공 등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원
- ※ “사고 발생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교사가 모든 과정을 개인적으로 감당함”(매일일보 등, '26.1.23.)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안전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및 학교 매칭의 어려움 지속
 - ※ 보조인력풀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시도별 확보 인원 및 지원 편차가 큰 상황 [외부안전요원] '25년 2,178명 → '26년 2,359명, [기타보조인력] '25년 2,359명 → '26년 3,224명

2 체계적 시스템 부재로 인한 업무 부담

-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어, 교사 개인 역량별 프로그램의 수준 차이 발생 및 전반적 질 저하 우려
 - 특히, 기관별 개별 플랫폼 운영에 따른 체험학습 프로그램 산재로, 학교 현장의 체험 정보 취득 및 비교 분석 한계
-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모든 과정*의 업무를 교사가 전담하고 있어, 행정업무 부담** 및 법적 책임 가중
 - *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기획부터 계약, 사전답사, 안전관리 및 사후 정산까지 체험학습 준비·운영 전 과정의 행정 업무 수행
 - ** 안전 전문가가 아닌 교사에게 차량,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함(교총, 전교조 '26.3.9.)

3 교육과정과 연계 부족 및 단조로운 프로그램

- 현장체험학습의 취지와 달리 교실 수업과 체험활동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고, 단순 견학 및 놀이 중심으로 운영 편중
 - ※ 단순 여행, 놀이공원 중심의 체험학습은 지양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소규모·근거리·주제형 체험학습 실시 필요(현장 의견, '26.3.9.)
 - 특히, 미술관, 문화유산 등 관람 시 전문 해설 인력의 배치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저하
- 교육적 가치가 검증된 교육청 및 지자체 소속기관의 프로그램 부족으로 민간 시설 또는 놀이공원 위주의 프로그램 의존 심화

- ⇒ 안전사고 발생 및 책임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 안전관리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계 구축
- ⇒ 수업과 연계한 체험 및 실천으로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비전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꿈을 키우는 현장체험학습

◎ 목표

- ✓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 ✓ 학교·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 완화

주요 추진 과제

01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



- ① 교사 다중 보호 체계 구축
- ② 전문 보조인력 확대 및 배치 지원
- ③ 사전 안전점검 지원 강화

02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 ①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강화
- ②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 발굴 확대
- ③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03

배움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 ①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 ② 유관기관 체험 프로그램 활용 확대

[과제1]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

① 교사 다중 보호 체계 구축

- (법령 정비)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의 면책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기준이 명료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26.下)
 - [면책권강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배제
 - [기준명료화] 사전예방 조치를 면책 요건에 포함하고,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사전예방 활동의 기준 명시

※ 개정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학교안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 하고,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의5(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 을 지지 아니한다.

- (교사 안전망)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원스톱 밀착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



- **[긴급지원체계]**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즉각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피해 보상, 심리치료 등 통합적 사후 조치 수행

* 세종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단' 구성, 제주여행 및 안전전문가를 포함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법률지원

- **[국가책임법률대응]** 사안 발생 시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적 대응의 전 과정 밀착 지원

※ 교원 희망 시, 민사소송은 교원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지원, 형사소송은 방어권 보장 및 법률 조력을 위한 변호사 선임 지원(단, 고의·중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구분	현행	개선(안)
지원체계	분산적·사후적 지원	국가책임형·밀착형 지원
지원시점	소송 진행 이후 지원	사안 발생 초기부터 지원
지원방식	사안별·개별적 제공	변호사 선임·소송대응까지 일괄 지원

※ 현재 교육청별 여건 및 사안에 따라 차이 존재, '26.2학기까지 단계적 상향 평준화 추진

- **[보상지원강화]**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원의 소송 비용 및 배상 책임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 확대

※ 교사의 면책권 강화와 연계하여 학교안전공제 보상 확대 추진

- (특이 민원 대응) 민원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조기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노력

-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를 차단하고,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의 일원화 대응

- 특히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처리하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첩 또는 지원 요청

※ 업무방해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의 적극적 고발 및 엄정 대응

- (가정 내 안전교육) 체험학습 매뉴얼을 통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등 학부모의 역할 명시

2 전문 보조인력 확대 및 배치 지원

- (보조인력 확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확대*

*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 당 1명' →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학급 규모, 학생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가능)

- (인력배치 지원)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직접 배치 등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대폭 완화

* 교육지원청 단위 현장체험학습 전담인력 배치 지원과 함께 학교-전문 보조인력 매칭을 위한 전국 단위 플랫폼 구축 등과 병행 추진

- (안전 전문성 강화) 소방청, 경찰청 등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보조인력 확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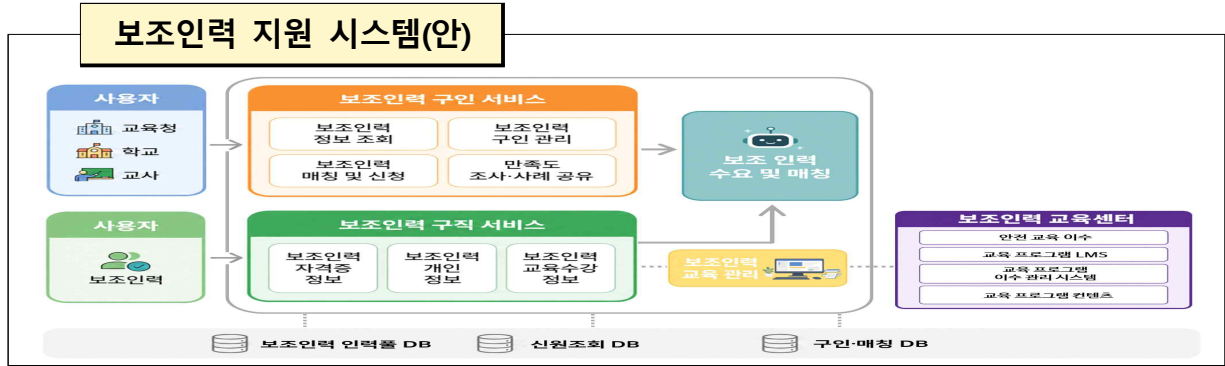
-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학생 인솔 등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 개발('26.下)

- (지원 시스템 마련) 교육청 및 학교가 쉽고 편리하게 보조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보조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26.下~)

* 창의교육넷(크레존)의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26.下)'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시도교육청 자체 학교-보조인력 매칭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단위 보조인력 DB를 구축하고 학교 요청 시 보조인력 매칭 지원

※ 플랫폼을 통해 보조인력이 참여 희망을 접수하며 (1차)서류심사 및 온라인 교육 → (2차)교육청 면접(필요시 추가 교육) 후 시스템에 등록



3 사전 안전점검 지원 강화

- (안전점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수학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지자체 협조)
-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체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대행 서비스 확대 추진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 학교에서 신청 시, 학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사전 안전 점검 시행
- 제주, 경주, 강화, 순천 등 지자체에서 실시 중

- (차량 안전점검) 봄·가을 현장체험학습 집중 기간 국토부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및 수학여행 차량 사전안전점검* 강화(전세버스공제조합 협조)

* 학교장 요청 시, 전세버스공제조합 소속 안전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차량 출발 전 안전 점검 시행

- 교육지원청에서 차량 사전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기관별 주요 점검 사항

- [국토부] 차량시설 및 차량 안전상태 점검, 운전자 무자격, 운행기록증 미부착 등 불법행위 적발, 안전운전 준수사항 안내 등 홍보
- [경찰청] 차량 대열운전 및 휴대폰 사용금지 안내, 운전자 음주 측정 단속 지원
- [교통안전공단] 차량시설 및 차량 안전상태 점검, 운행기록장치, 소화기,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

[과제2]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1]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강화

- (교육청 전담 지원)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의 밀착형 현장 지원 체계 구축
 - *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26. 30명 → '27. 200명)하여, 안전점검, 차량임차, 보조인력 배치, 계약체결 등 단위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 지원
- (선도교육청 운영) 교육청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모델 개발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선도교육청 운영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우수 지원 모델

▸ (경기)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선도지역 운영

- [지원내용] 교육지원청이 버스임차, 보조인력 배치, 체험처 연계, 계약체결 등 행정업무 종합 지원
- [운영현황] 6개 선도지역 선정(고양, 수원 등), 지역청별 최대 2억원 지원

▸ (세종)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수학여행 통합 지원 시범 실시

- [지원내용] 소규모학교 공동 현장답사, 수학여행 통합계약 지원 등 소규모학교의 수학여행 통합계약 지원
- [대상] 읍·면 지역 소규모 초·중학교

▸ (인천) 현장체험학습 버스 및 안전요원 지원

- [지원내용] 교육청 학교지원단에서 권역별 전세버스 계약업무 수행, 학교는 '체험 e든든' 플랫폼을 통한 신청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 '26년 기준 전세버스 2,246대, 안전요원 2,747명 지원 예정
- [대상]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 (공동협약체 운영) 시도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제도개선 사항 발굴, 현장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시도교육청 공동협약체 운영(분기별 개최)
 -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계약체결, 중복 안전점검 등 과도한 업무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간소화 추진(~'26.8.)

2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 발굴 확대

- (종합 패키지 활용) 계약업체가 숙식, 차량 등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 종합 패키지 확대

- ※ 교사는 학생과 함께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건강 이상 학생 등 특이 사항 밀착 관리
-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시 계약업체가 운영 및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제안요구서에 명시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제안요구서(예시)

- ▶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제안 요구 시 운영 및 안전관리 총괄
 - 안전요원(8명, 3일) 및 야간안전요원(4명, 2박) 배치, 배치계획 작성(범죄경력 조회 포함),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학생 및 인솔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포함
 -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제출, 당일 차량 안전 점검표 및 안전 서약서 등 작성·제출, 출발 전 음주 측정 후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면 당일 출발 시 음주 감지는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체험기관의 학생 안전 예방조치 요구 등 협력

-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조달청, 한국여행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상품 확대

- ※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등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협조 요청('26.上)

나라장터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 ▶ 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참고하여 학교가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설계 (비용, 인원, 코스 등)하여 업체에 제안 요청 → 업체가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후 계약
- ▶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25년 기준) 49개 업체 등록, 55건 계약(75억원 규모) 실시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서비스 → 여행/숙박 → 맞춤형 여행/연수

③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 (통합 플랫폼 구축) 우수 체험처 안내, 보조인력 관리,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등을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 플랫폼 구축('26.下)

※ 창의교육넷(크레존)의 기능고도화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개편

- **[체험정보]** 국내·외 우수 체험처,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안전 인증 시설, 활용 후기 등 체험학습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
- **[보조인력]** 보조인력 희망자의 온라인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전국단위 보조인력 통합 관리 및 구인·구직 매칭 지원
- **[활동설계]** 맞춤형 정보입력*을 통해 프로그램과 숙식 및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활동 목적, 체험 지역, 날짜, 인원, 안전·식단·숙소 관련 요구사항 등



○ (통합플랫폼 고도화) AI을 활용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기본 문서*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28.~)

* 현장체험학습 계획서, 사전답사 및 안전관리 계획, 학부모 안내서, 결과보고 등

-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 협의를 통해 서식의 표준화된 툴 구성('26), AI 탑재 등 시스템 개선 및 시범운영('27~)

[과제3] 배움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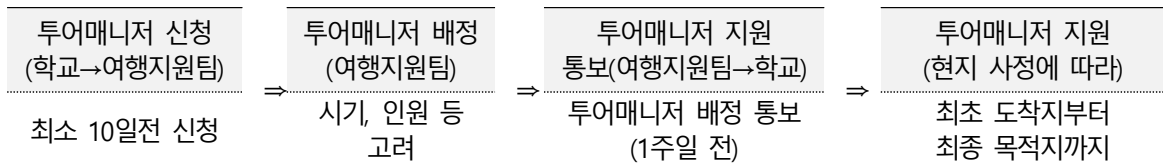
1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 (지역 전문 해설사) 학생과 동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 등을 안내하는 전문 해설 인력 지원 확대(지자체)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수학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은 별도로 실무자 협의 추진('26.下)

전북 인센티브 교육여행단 지원사업

- ▶ 전라북도에서의 전체 일정에 버스당 1명의 투어매니저가 동행하며 인솔 지원 및 문화관광 해설 등 수행



- ▶ 체험학습 지원 또는 공연·레크리에이션 지원('25년 기준, 학생 1인당 5천원, 1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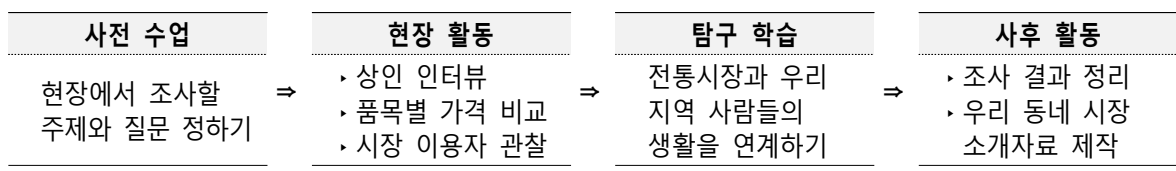
- (교육과정 연계 강화) 교실에서의 학습이 현장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26.下~)

- 체험학습 프로그램 공모전*('26.下), 연구대회 개최('27.)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 우수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 해설자료, 안전 계획 등을 보완하여 함께 학교 '수업의 숲'을 통해 제공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 모델(예시)

- ▶ 주제/대상 :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우리 고장의 생활과 경제 / 초등학교 4학년
- ▶ 연계 과목 및 내용 : <사회> 지역의 생활 모습과 경제활동, <수학> 자료 조사와 표.그래프, <국어> 인터뷰하기와 발표하기



② 유관기관 체험 프로그램 활용 확대

- (교육기관 활용 확대)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등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확대('27.~)
 - 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인력, 이동차량, 숙박시설 등을 일괄 패키지로 제공

교육기관 주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예시)

- ▶ (인천학생교육원) 체험학습장* 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 * 흥왕체험학습장 강화지역 역사, 문화교육, 서사체험학습장 조릉박 인형극 활용 공감 교육, 해양환경체험학습장 해양자원 탐구·토론, 국화리학생야영장 생태체험 탐사 활동
- ▶ (대구교육청) 교육청 소속 8개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8개* 주제별 학습 안내, 진로상담 등 제공
 - * 문화예술, 역사탐방, 생태환경, 창의융합, 세계시민, 도서인문, 시공간탐험, 미래직업

- (유관기관 연계)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플랫폼’에 유관기관의 체험교육 안내 플랫폼을 연계하여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 통합 제공('26.下~)

체험프로그램 관련 주요 플랫폼

- ▶ 진로 체험프로그램 플랫폼 **꿈길**(교육부)
 -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박물관 등 전국 2,700여 개 인증기관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체험 기회 제공
- ▶ 전국 박물관·미술관 교육 통합플랫폼 **모두(MODU)**(문체부)
 -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지역별, 대상별, 유형별 맞춤형 검색 및 예약
-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서비스 플랫폼(성평등가족부)
 - 전국 청소년 인증 체험 프로그램을 활동영역별,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검색 및 연계
 -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서비스(youth.go.kr/youth)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 테마별 관광정보 제공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관광공사)
 - 전국 문화, 역사, 레저, 휴양 등 테마별 관광 정보 제공 및 관광, 음식, 숙박 등 여행코스 설계 지원

- 교사 면책권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법」 등 법령 정비(~'26.下)
 - ※ 「학교안전법」 법령 개정 발의(~'26.6월중) 및 관련 지침 개정('26.下)
- 현장체험학습 안전점검 강화 및 프로그램 발굴 협조('26.5월~)
 - ※ 지자체, 국토부, 경찰청, 문체부, 조달청 등 유관기관 업무 협의 추진
-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상품 개발 및 확대 관련 기관 협의('26.6월)
-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26.12월)
- 보조인력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6.9월~)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공동협의체 운영(수시)

참고

특이 민원 대응 절차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5조~제37조¹⁾, 「민원처리법」
- (학교 단위 대응)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해 대응
 - ※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에 따라 특이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관할청 대응)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에서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
 - ※ 학교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 특이 민원 처리 방법 등은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에 규정

특이 민원 대응 절차		
단계	주요 대응 내용	
1단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요구 • 욕설,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 • 학교장이 민원 거부 또는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할 경우 • 흥기 소지, 폭언·폭행 발생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 제한 또는 퇴거 조치 • 민원 창구 일시적 이용 제한 • 수사기관에 신고 • 피해 교직원 보호
2단계 학교 →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민원 처리 지원 요청·이첩 ※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이어드림)을 통해서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첩 가능
3단계 교육지원청	①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은 학교로부터 이첩받은 민원 처리 지원	
	②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③ 중대 침해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기관장 고발(업무방해죄 등) 추진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 4. 28.), 시행(2026. 10. 29.)